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72

발의연월일: 2020. 8. 4.

발 의 자:백혜련·양정숙·김남국

이형석 · 김회재 · 박성준

박영순 · 장철민 · 강민정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(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함)으로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현행법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, 법제처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시설에 해당하지만 현행법 제9조제27호의 규정에서 해당 금지행위 및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.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

설로 규정한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.

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'호텔업'에서 '관광숙박업'으로 변경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7호).

법률 제 호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7호 중 "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2호"를 "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"로, "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"을 "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	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
금지행위 등) 누구든지 학생의	금지행위 등)
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	
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	
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	
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	
만,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	
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	
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	
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	
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	
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	
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	
은 제외한다.	
1. ~ 26. (생 략)	1. ~ 26. (현행과 같음)
27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	27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
<u>제2호</u> 에 따른 숙박업 및 <u>「관</u>	제1항제2호
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	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
<u>가목에 따른 호텔업</u> (「국제회	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
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	
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	
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	

외한다)	
28. • 29. (생 략)	28. • 29. (현행과 같음)